

# 開化期の 高等教育 제도

##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변천사(1)—

金 英 宇

(公州大 教育學科)

###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變遷史

1. 開化期の 高等教育 제도
2. 日政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3. 日政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4. 日政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5. 日政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 1. 序 論

1894년의 甲午更張을 계기로 1895년부터 한국 교육의 近代化 작업이 추진되면서 舊韓國 政府에서는 近代의인 초등교육 기관(小學校), 중등교육 기관(中學校·師範學校·外國語學校)과 함께 高等教育機關으로 法官養成所와 醫學校, 商工學校 등을 신설하는 한편 朝鮮朝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존속해 온 成均館을 개편하여 계속 존치케 하였다. 한편 1905년의 乙巳條約 체결로 日帝의 統監府가 한국에 설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國權이 상실되는 과정에서 日帝는 舊韓國 政府가 설치했던 고등교육 기관의 제도면에 개편을 가하여 계속 官立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존치시켰다.

한편 乙巳條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國權 상실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救國을 위한 教育運動이

全國적으로 전개되어 많은 수의 私立學校가 新設되면서 普成專門學校를 위시하여 大東專門學校·漢城法學校 등 전문학교 수준의 敎育을 실시하는 私立 고등교육 기관도 설치되고 崇實學堂大學部·梨花學堂 高等科·培材學堂 大學科·敝新學校 大學科 등 선교계의 고등교육 기관이 신설되어 고등교육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1895년부터 1911년 사이에 韓國에는 官立 고등교육 기관과 私立 고등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私立은 그 設立 主體別로 보아 韓國人이 설립한 것과 선교계의 學校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韓國 開化期の 高等教育을 고찰함에 있어 官立 고등교육 기관과 私立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되, 私立의 경우는 그 設立 主體別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官立 高等教育機關의 制度的 概要

1895년부터 敎育의 近代化 작업을 추진하여 근대적인 學制를 제정한 舊韓國 政府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法官養成所, 醫學校, 商工學校와 農商工學校(1906년에 農林學校와 工業傳習所로 분리됨)를 신설하는 한편 成均館을 개편하였다. 따

라서 韓國의 開化期에 있어 官立 고등교육 기관은 成均館·法官養成所·醫學校·農林學校·工業傳習所 등인 바, 이들 관립 고등교육 기관의 制度的 개요와 制度面의 변천 과정을 學校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成均館

舊韓國 政府는 1895년 7월 2일자 勅令 제 136호로 成均館官制<sup>1)</sup>를 제정하여 成均館의 설치 목적·직원의 종류와 직무를 규정하고, 學部는 1895년 8월 9일자 學部令 제 2호로 成均館經學科規則<sup>2)</sup>을 제정하여 成均館의 교육 요지·학과목과 그 程度·수업 연한·學期·入學資格·退學·試驗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成均館의 制度的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設置目的

성균관은 學部大臣의 관리하에 속하며, 文廟를 虔奉하고 經學科를 肄習함(官制 1조).

#### (2) 教育要旨

學生으로 하여금 經學을 肄習하고 德行을 修飭하여 文明한 진보에 주의함을 요지로 함(規則 1조).

#### (3) 修業年限

3年(規則 3조).

#### (4) 學科目

三經四書及 그 諺解綱目, 本歷史, 作文, 但 時宜에 의하여 本國地誌·萬國史만국지지·산술을 肄習케 함(規則 2조).

#### (5) 職員의 종류와 人員及 任務

① 職員의 종류와 人員數: 館長 1인, 教授 2인 이하, 直員 2인(官制 2조).

#### ② 職員의 任務

가. 館長: 學部의 奏任官 중에서 임명하며, 館務를 掌理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동 제 3조).

나. 教授: 學部의 奏判任官으로 겸임케 하고, 生도의 學業에 관한 事를 掌理(동 제 4조).

다. 直員: 判任 5등 이하로 정하며, 文廟를 지키고 上官의 命을 받아 館內 서무에 종사(동

제 5조).

#### (6) 學期

前後 2學期(전학기: 7.21~12.25, 후학기: 1.16~6.15)(規則 제 6조).

#### (7) 入學資格

다음의 자격자로 入學試驗에 합격한 자(동 제 9조).

① 연령 20세 이상 40세까지

② 操行方正者·志氣確固者·分曉義理者·頗識時宜者

#### (8) 退學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성균관장이 退學을 命함(동 제 15조).

① 操行을 不修하며 屢度戒飭하되 悔悟치 아니하는 자.

② 學業이 不進하여 연속 2회 居下하는 자.

③ 不告缺席이 1개월 이상인 자.

#### (9) 試驗의 종류와 성적 평점

① 시험의 종류: 임시·정기·졸업 시험 등 3種(동 제 16조).

② 시험 성적 평점: 시험 성적은 100점계로 하되, 定期試驗의 각 학과 평점은 56점 이상을 득치 못하면 不許及弟함(동 제 19조).

舊韓國 政府는 1896년 1월 11일자 勅令 제 6호로 成均館官制를 일부 개정하여<sup>3)</sup> 成均館長을 학부의 奏任官이나 성균관 教授로 겸임케 하고, 教授는 학부의 奏任 또는 判任으로 겸임케 했던 것을 奏任 혹은 判任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學部는 1896년 7월에 成均館經學科規則을 개정하였는 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sup>

#### (1) 學科目

3經 4書(并諺解), 史書(左傳史記·綱目·속장목·明史 등), 本國史·本國地誌·萬國地理, 歷史·作文·算術, 단 時宜를 인하여 他經典及 史文을 肄習함도 가함(제 2조).

#### (2) 修業年限

年終試驗及弟로 爲準함(제 3조).

(3) 入學資格에 있어서 연령을 20세 이상

1) 舊韓國官報 제105호(1895.7.4).

2) 동 제135호(1895.8.12).

3) 동 제222호(1896.1.15).

4) 동 제379호(1896.7.16).

40세인 자로 했던 것을 20세 이상 50세인 자로 하였다(제8조).

(4) 試驗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① 種類: 日課, 月課, 年終試 등 3種(제15조).
- ② 日課: 독서, 作文 양과만 시험(제16조).
- ③ 月課: 每月終에 시험(제17조).
- ④ 年終試驗: 每年終에 施行(제18조).

舊韓國 정부는 1905년 2월 26일자 勅令 제23호로 成均館官制를 개정하여 직원으로 長, 教授, 博士, 直員 등을 두도록 하였는 바, 박사는 經學科 儒生 被選人과 3년 일차식 京外各道에 經義問對 혹 時務策 被選人과 常年에는 京外各道에 宿學老儒 被選人으로 순차 叙任토록 하였다.<sup>5)</sup>

정부는 1907년 9월 28일자 勅令 제23호로 成均館官制를 개정하여 성균관의 직원 중 博士를 司業으로 바꾸고, 司業은 매년 通計無過 50인으로 하되, 經學科 儒生 被選者 10인과 京城 및 각도 40세 이상 儒生 時務策 및 經義問對 被選者 40인을 循次 叙任하도록 하였다.<sup>6)</sup> 한편 學部는 1907년 10월 25일자 學部令 제3호로 成

均館 司業試選 規程을 제정하여 司業試選方法과 試驗問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sup>7)</sup>

정부는 1908년 10월 29일자 勅令 제76호로 成均館官制를 개정하여<sup>8)</sup> 職員은 館長·教授·直員을 두고, 성균관에서는 매년 1회 司業試選을 행하도록 하였다. 또 成均館의 졸업자나 司業試選에 합격한 자를 司業이라 칭하고 司業은 判任 官으로 대우하도록 하였다.

學部는 1908년 10월 31일자 學部令 제20호로 成均館 司業試選 規程을 새로 제정하여 成均館 司業의 試選을 위한 試選委員, 試選의 種類, 試選問題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sup>9)</sup>

成均館은 1908년 11월에 學部의 인가를 받은 學則에 의거하여 1909년 4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本 學則에 의거하여 成均館의 제도적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즉 成均館의 學生 定員은 30명이고, 수업 연한은 3년이며, 學年은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이다. 성균관의 學科目과 그 程度 및 매주의 教授 時數는 <표 1>과 같다.

입학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신

<표 1> 성균관의 학과목·정도·수업 시수

| 학과목  | 학 년      |                | 2 학 년    |                | 3 학 년    |             |
|------|----------|----------------|----------|----------------|----------|-------------|
|      | 수업<br>시수 | 정<br>도         | 수업<br>시수 | 정<br>도         | 수업<br>시수 | 정<br>도      |
| 修身   | 1        | 道德의 要領         | 1        | 1학년과 同         | 1        | 1학년과 同      |
| 經學   | 7        | 강독·文法·作文·習字    | 9        | 1학년과 同         | 9        | 1학년과 同      |
| 國語   | 6        | 강독·作文·文法       | 6        | 강독·作文·文法       | 6        | 강독·作文·文法    |
| 日語   | 4        | 독법·해석·회화·서취·습자 | 4        | 읽기·해석·번역·회화·서취 | 4        | 2학년과 同      |
| 歷史地理 | 3        | 本國歷史·本國地理      | 3        | 東洋歷史·東洋地理      | 3        | 萬國歷史·萬國地理   |
| 數學   | 4        | 算術             | 4        | 산술             | 4        | 산술·대수·기하·초보 |
| 理科   | 2        | 物理             | 2        | 物理·化學          | 2        | 物理·化學       |
| 圖畫   | 2        | 自在畫            | 2        | 自在畫            | 2        | 自在畫·用器畫     |
| 法制經濟 | 2        | 法制大意·경제대의      | 2        | 1학년과 同         | 2        | 1학년과 同      |
| 體操   | 3        | 體操             | 3        | 體操             | 3        | 體操          |
| 계    | 34       |                | 36       |                | 36       |             |

5) 동 1905년 3월 1일자 號外.

6) 동 제3887호(1907.10.3).

7) 동 제3913호(1907.11.2).

8) 동 제4216호(1908.10.31).

9) 동 제4218호(1908.11.3).

10) 동 제4236호(1908.11.25).

체 건건하고 품행 方正한 자 및 經學의 소양을 가진 자이다. 學生의 성적은 10점 단점제로 표시하며, 學生은 모두 기숙사에 수용토록 하였다. 이상의 學則에 따라 성균관은 제도면에서 近代的인 教育機關으로 대폭 개편되어 특히 經學 이외에 國語·日語·數學·歷史地理·理科·圖畫·體操·法制經濟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 2) 法官養成所

舊韓國 정부는 1895년 3월 25일자 勅令 제 49호로 法官養成所 規程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에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法官으로 채용할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法官養成所 規程에 의한 法官養成所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11)</sup>

### (1) 目的

法官養成所는 速成으로 司法官으로 채용할 자격자를 양성(1조).

### (2) 職員

所長 1인, 敎官 약간인(2조).

### (3) 入學 資格

연령 20세 이상으로 入學試驗 及 弟者 또는 현재 官署奉職者(4조).

### (4) 學科目

法學通論·民法·刑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기타 현행 法律 演習(7조).

### (5) 修業年限

6개월(8조).

### (6) 卒業者의 대우

졸업자는 司法官에 채용될 수 있음(11조).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法部는 1895년 4월에 法官養成所를 설치하고 學生을 모집하여<sup>12)</sup> 법관으로 채용될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舊韓國 정부는 1896년 1월 11일자<sup>13)</sup> 勅令 제 3

호로 法官養成所 規程의 제 4조(入學資格)를 개정하여 입학 연령을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하였다.<sup>13)</sup>

정부는 1903년 4월에 法官養成所의 직원 중 '敎授 약간인'을 敎官 12인(奏任 3, 判任 9)으로 개정하는 한편 博士 4인(判任)을 직원으로 두도록 하였다. 또 敎官은 法律通曉人으로 叙任하고 博士는 本所 졸업자로 循序叙任하였다가 司法官으로 收用하도록 하였다.<sup>14)</sup>

法部는 1904년 7월 30일자 法部令 제 2호로 法官養成所 規程을 제정하여 본 양성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法官養成所 規程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5)</sup>

### (1) 目的

法官養成所는 法官에 필요한 法律專門을 교수(1관 1조).

### (2) 學 課

法學通論·民刑法·민형사소송법·憲法·行政法·國際法·商法·現行法律·산술·作文·外國律例(2관 1조).

### (3) 黜 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監督이 黜學을 命함(4관 4조).

#### ① 他校 轉學者

② 操行을 不修하여 屢度戒飭하되 悔悟치 아니하는 자.

#### ③ 규칙 위배자

④ 學業은 誠心이 무하고 부당한 사항에 參議妄論하는 자

#### ⑤ 不告缺席이 1주일 이상인 자

### (4) 試驗의 種類

月終試驗과 卒業試驗(5관 1조)

#### ① 月終試驗：每月終에 그 學力을 檢定

② 卒業試驗：所授全科를 통하여 그 學力을 檢定

정부는 1904년 2월 26자 勅令 제21호로 法

11) 국사편찬위원회. 高宗時代史三, 서울: 槧求堂, 1969, pp.765~766.

12) 法官養成所는 1895년 4월에 國文·漢文·歷史·作文·地誌 등의 學科 시험으로 學生을 모집하였다. [〈廣告〉, 舊韓國官報 제 9호(1895.4.10)].

13) 舊韓國官報 제222호(1896.1.15).

14) 등 제2609호(1903.4.4).

15) 등 제2897호(1904.8.5).

官養成所官制를 개정하여 本所의 목적을 ‘法律學 敎習에 관한 사무를 掌轄’으로 하고, 직원으로 長 1인과 敎官 6인을 두도록 하였다.<sup>16)</sup>

法部는 1905년 4월에 法部令 제1호로 法官養成所 規則을 새로 제정하여 制度面에서 개편을 하였던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7)</sup> 즉 本所는 “法官에 필요한 法律專門을 敎授함을 목적으로 하고 졸업생은 司法官으로 채용하며, 學生에게 교과서를 공급하고 필요한 지필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本所의 교과목은 현행 法律·法學通論·憲法·行政法·刑法·民法·商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국제법·外國律例·作文·산술 등이며, 학기는 春學期와 秋學期로 하였다. 입학 자격은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로 하고,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하였으며, 시험의 종류는 月終·學期·學年試驗 등이다.

이상의 규정에 따라 法官養成所는 1905년 4월부터 3년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法部는 1905년 12월 4일자 法部令 제5호로 법관 양성소 監督에 關한 規則을 제정하여 소장·교수·학생은 政官에 간여치 못하도록 하고(1조), 소장·교수·학생은 서로 결탁하여 休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2조), 이를 위반하거나 선동하는 자는 상당한 징벌에 처하도록 하였다.<sup>18)</sup>

法部는 1906년 3월 30일자 法部令 제1호로 法官養成所 規則을 새로 제정하여<sup>19)</sup> 1906년 4월부터 적용토록 하였던 바, 本規則上에 명시된 法官養成所의 제도적 개요를 보면, 內·外國의 法律·敎授를 목적으로 한 本養成所는 수업 연한을 2년으로 하고 졸업자에게 成法學士의 칭호를 부여한다. 品行이 方正하고 연령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며, 교과목은 刑法大全·明律·無冤錄·法學通論·憲法·刑法·民法·商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行

政法·국제법·經濟學·財政學·外國語 등이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法官養成所는 1906년 4월부터 다시 2년제로 운영하게 되고, 졸업자에게 成法學士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정부는 1906년 6월 6일자 勅令 제26호로 法官養成所官制를 개정하여<sup>20)</sup> 本所에 長 1인, 學監 1인, 敎官 6인, 兼任敎官 약간인, 博士 1인을 두도록 하였다.

정부는 1907년 12월 13일자 勅令 제53호로 法官養成所官制를 제정하여<sup>21)</sup> 法官養成所의 목적을 ‘法部大臣의 管理에 속하며 司法官될 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하고 직원으로 所長, 敎授, 幹事, 助敎授, 主事, 繙譯官과 繙譯官補를 두어 교수와 조교수는 학생의 敎授를 담당하고, 간사와 주사는 所內의 사무를 담당하며, 번역관과 번역관보는 번역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法部는 1908년 1월 17일자 法部令 제1호로 法官養成所令을 새로 제정하여<sup>22)</sup> 本所의 목적을 ‘司法官될 만한 자의 양성’으로 하고, 수업 연한을 3년으로 하였으며, 학년을 4월 1일부터 翌年 3월 31일까지로 하였다. 이에 따라 法官養成所는 1908년 4월부터 다시 3년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法部는 1908년 3월 6일자 法部告示 제1호로 法官養成所 學則을 인가 공포하여<sup>23)</sup> 교수 과목을 法學通論·民法·민사소송법·刑法·형사소송법·商法·國際法·行政法·국제공법·국제사법·明律·理財學·實務演習·日本語·漢文·數學·부기·체조 등으로 하고, 입학 자격을 17세 이상 3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며 품행 방정한 남자로 官立의 日語學校와 高等學校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豫料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本所의 規律를 범하거나 本所의 體面을 훼손하는 자는 戒·退場·停學·黜學 등

16) 동 1905.3.1 號外.

17) 동 제3111호(1905.4.12).

18) 동 제3315호(1905.12.6).

19) 동 제3418호(1906.4.4).

20) 동 제3475호(1906.6.9).

21) 동 1907년 12월 18일자 號外.

22) 동 제3980호(1908.1.25).

23) 동 제4029호(1908.3.24).

의 정벌을 所長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자에게 成法學士의 칭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學則에 따라 法官養成所는 1908년 4월에 豫科를 설치하였는 바, 豫科의 수업연한은 1년이고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 23세 이하의 남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로 하고, 교수 과목은 法學通論·論理學·歷史·地理·數學·日本語·體操 등으로 하였으며 예과 졸업자는 本科에 편입하도록 하였다.<sup>24)</sup>

法部는 1908년 3월 19일자 法部告示 제2호로 法官養成所 學則(1908.3.6 法部告示 제1호)을 개정하여<sup>25)</sup> 교수 과목 중 理財學을 經濟學으로, 日本語를 外國語로 바꾸고, 입학 자격 중 學力 사항을 官立高等學校·官立外國語學校·官立日語學校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政府는 1909년 10월 28일자 勅令 제84호로 法學校官制<sup>26)</sup>를 제정하여 법관 양성소를 學部소관의 法學校로 개편하였는 바, 法學校官制에 의하면 法學校는 法官이 될 만한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1조), 직원으로 學校長, 教授와 助教授, 學員監, 書記를 두어 학생을 교수하고, 學生 監督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學員監), 서무에 종사케 하였다(書記).

### 3) 醫學校

舊韓國 정부는 1899년 3월 24일자 勅令 제7호로 醫學校官制를 제정·공포하여 근대적인 醫學校의 설치와 교육 실시에 필요한 法的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韓國 최초의 근대적인 官立醫學校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27)</sup>

#### (1) 目的

國民에게 內外 各種 醫術을 專門으로 教授(1조).

#### (2) 修業年限

3년(2조).

#### (3) 所屬과 경비

學部の 直轄로 경비는 國庫에서 支辦(3조).

#### (4) 職員의 種類와 人員

學校長 1인(委任), 敎官 3인 이하(委任 또는 判任), 書記 1인(判任)(5조)

#### (5) 職員의 任務

① 學校長: 醫學에 熟練한 人으로 任命하며, 一切 校務를 掌理하며 소속 직원과 學徒를 監督(6조)

② 敎官: 學徒의 敎授를 掌하며 學徒를 監督(7조)

③ 書記: 上官의 命을 承하여 庶務會計에 종사(8조)

#### (6) 地方醫學校

地方情況에 의하여 醫學校를 地方에도 둘 수 있다(12조).

이상과 같은 醫學校官制에 의거하여 정부는 池錫永을 醫學校長으로 임명하고 2명의 敎官과 書記 1명을 임명하여<sup>28)</sup> 1899년 4월에 醫學校를 설치하였다. 醫學校에서는 1899년 8월에 학생을 모집하여<sup>29)</sup> 같은 해 9월부터 醫學敎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學部는 1899년 7월에 學部令 제9호로 醫學校規則을 제정하여 醫學校의 제도를 완비하였는 바, 醫學校規則에 규정된 醫學校의 제도적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30)</sup>

#### (1) 目的

醫學校는 各種 醫術을 敎授함이라(1관 1조).

#### (2) 修業年限

速成科 3년(1관 3조).

#### (3) 學科目

動物·植物·化學·物理·解剖·生理·藥物·진단·內科·外科·안과·위생·法醫·種痘·체조(2관 1조)

#### (4) 學年·學期

24) <法官養成所豫科學員募集廣告>, 舊韓國官報 第4051호(1908.4.18).

25) 舊韓國官報 第4045호(1908.4.11).

26) 令 第4517호(1909.10.29).

27) 舊韓國官報 第1220호(1899.3.28).

28) 池錫永은 3월 28일자로 임명되고, 敎官과 書記는 3월 29일자로 임명되었다-舊韓國官報 第1223호(1899.3.31).-

29) <醫學校學員勸赴廣告>, 舊韓國官報 第1313호(1899.7.14).

30) 舊韓國官報 第1307호(1899.7.7).

① 學年 : 秋期부터 翌年 하기말까지의 1년(3관 3조)

② 學期 : 春學期(1월 6일~하기 휴학), 秋學期(秋期上學~12월 25일)(3관 2조)

(5) 入學 資格

中學校 졸업자로 신체 강건한 20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단, 당분간 中學校 졸업생이 無함으로 文算이 稍裕하고 才智가 證明한 자를 特試許入함(4관 2조)

(6) 入學試驗科目

漢文(독서·作文), 國文(독서·作文), 산술(4관 3조)

(7) 黜 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校長이 黜學(5관 2조)

① 卒業前에 他學校로 轉學하는 자

② 操行을 不修하여 屢度戒飭하되 悔悟치 아니하는 자

③ 校規 위반자

④ 學業不進으로 연속 3학기에 進級치 못한 자

⑤ 學業은 不勤하고 不當한 사항에 參議妄論하는 자

⑥ 無告缺席이 1주일 이상인 자

(8) 試驗의 種類

月終試驗, 學期試驗, 學年試驗(6관 1조)

정부는 1907년 3월 10일자 勅令 제9호로 大韓醫院官制를 제정하여 議政府 산하에 大韓醫院을 두고 大韓醫院內에 教育部를 두어 醫學教育을 담당토록 하였다. 大韓醫院教育部는 醫師·藥劑師·산과·간호부의 양성과 敎科간 편찬 등의 사항을 관장하고 醫學教育을 위해 敎官 7인과 學監 1인을 두도록 하였다. 大韓醫院官制에 따라 정부는 廣濟院과 醫學校를 통합하여 大韓醫院을 신설하고, 특히 醫學校를 教育部로 개편하여 1907년 3월부터 의사·약제사·산과·간

호부 양성 교육을 새로이 실시하게 하였다.

정부는 1907년 12월 27일자 勅令 제73호로 大韓醫院官制를 개정하여<sup>31)</sup> 1908년 1월부터 議政府 소속으로 있던 大韓醫院을 內部的 管轄로 이속시키는 한편 大韓醫院內에 醫育部를 두고, 敎授(奏任 6인)와 副敎授(判任 3인), 學生監(奏任 1인) 등의 직원을 두어 醫師·藥劑師·산과와 간호부 양성 교육과 醫學 敎科서 편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09년 2월 4일자 勅令 제10호로 大韓醫院官制를 개정하여 大韓醫院에 附屬醫學校를 두어 의사·약제사·산과·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다.<sup>32)</sup> 이에 따라 정부는 大韓醫院 醫育部를 大韓醫院 附屬醫學校로 개편하고 敎授와 學生監을 두어 醫學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정부는 1909년 2월에 大韓醫院의 醫育部를 同院의 附屬醫學校로 개편하고, 같은 해 4월에 醫學科生 50명을 모집하여<sup>33)</sup>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입학생 50명 중 20명은 관비생으로 하여 이들에게 食料와 被服을 급여하였다.

한편 內部는 1910년 2월 1일자 內部令 제5호로 大韓醫院附屬醫學校 規則을 제정하여 大韓醫院 附屬 醫學校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sup>34)</sup> 즉 本醫學校에는 의학과·약학과·산과과·간호과 등 4科를 두고(1조), 수업 연한은 의학과 4년, 약학과 3년, 산과과와 간호과는 각각 2년으로 하였다(2조). 입학 자격은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로 操行이 방정하고 신체 검사와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12조). 학년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학기를 2학기(前學期와 後學期)제로 하고(8조), 수업 일수는 매학년 200일 이상으로 하였다(15조). 學生에게 수업료를 징수치 아니하고(5조) 모두 관비생으로 하여 식비·피복비·잡비를 급여하는 대신(26조) 졸업자에게 3년(의학과), 2년(약학과), 1년(산과

31) 동 제3712호(1907.3.13).

32) 1907년 12월 29일 舊國官報.

33) 동 제4311호(1909.2.26).

34) <大韓醫院附屬醫學校學生募集廣告>, 舊國官報 제4319호(1909.3.8).

35) 舊國官報 제4596호(1910.2.7).

과와 간호과)씩의 복무 의무를 아울러 부과하는 한편(28 조) 진사 자격을 부여하여 의학진사·약학진사로 부르게 하였다(25 조). 또 本校에 員外生制를 두어 私費로 入學을 원하는 학생은 定員外로 입학할 수가 있되, 員外生數는 의학과 20 명, 약학과 10 명, 간호과 10 명으로 하였다(29 조).

#### 4) 農林學校

大韓帝國 정부는 1899 년에 官立 商工學校를 설치하여 상업과 공업에 관한 전문적인 實業教育을 실시하게 하다가 1904 년 7 월에 農商工學校로 개편하여 농업에 관한 전문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06 년에 농상공학교를 전공 영역별로 나누어 별도의 교육 기관에서 實業에 관한 專門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06 년 8 월 27 일자 勅令 제39호로 農林學校官制를 제정하고<sup>36)</sup> 1906 년 9 월 10 일자 農商工部令 제48호로 農林學校規則을 제정하여<sup>37)</sup> 1906 년 9 월에 농상공부 소속으로 農林學校를 신설하였다.

農林業에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本校는 2 년제의 本科, 研究科(1 년), 速成科(1 년 이내)를 두었는 바, 연구과는 본과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農業이나 林業을 더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 지금의 大學院과 같은 성격의 과정이다.<sup>38)</sup> 速成科는 농업·임업에 관한 과목 중 특수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다. 입학 자격은 만 15 세 이상 30 세 이하인 자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 단정하며 在學中 가사에 관계가 없는 자로 하며, 本科와 速成科 지원자에게 입학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년은 4 월 1 일부터 이듬해 3 월 31 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3 학기로 하였다. 시험은 임시·학기·학년·졸업 시험의 4 종으로 하고, 평점은 100점

만점제로 하였다. 學生定員은 本科 80 명, 研究科 40 명으로 하고, 本科와 研究科生에게 학비를 지급하였다. 본교에 교장, 교수와 교수보, 司監, 서기 등의 직원을 두도록 하였다. 本科의 교과목은 修身·日語·數學·物理·化學·氣象·農學大意·토양 및 비료·作物·畜産·養蠶·農産製造·林學大意·造林學·수의학대의·經濟 및 法規·實習 등이며, 研究科의 교과목은 토양학·비료론·植物生理 및 作物病虫害·畜産學·養蠶及製絲·農産製造學·農政學(이상 農學), 森林數學·造林及森林保護學·森林經理學·森林利用學·林政學(이상 林學) 등이다.

農林學校는 1906 년 9 월에 農商工學校의 農科生과 京城學堂의 農業速成科生을 1 학년에 편입시켜 농림학교의 수업을 개시하였다.<sup>39)</sup>

農林學校는 1906 년 10 월에 林學速成科를 설치하여 農商工部의 模範造林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sup>40)</sup>

정부는 1908 년 3 월 4 일자 農商工部令 제62호로 農林學校規則의 일부를 개정하여 速成科는 농업·임업·수의에 관한 교과목 중에서 특수한 것을 수업케 하고 졸업자는 재학 중에 관비를 지급받은 年數의 2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는 義務를 부과하였다.<sup>41)</sup>

農林學校는 1908 년 4 월에 林學速成科를 폐지하고 수의속성과를 신설하였는 바, 1909 년 4 월에는 수의속성과도 폐과시켰다.<sup>42)</sup>

정부는 1909 년 6 월 1 일자 農商工部令 제2호로 農林學校規則을 개정하여 本科의 수업 연한을 3 년으로 연장하고, 본과의 學生 定員을 120 명으로 하였다. 入學 資格은 본과는 만 15 세 이상 25 세 이하인 普通學校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고, 速成科는 만 20 세 이상 만 30 세 이하인 자로 하였다. 本科의 교과목에 있어서는 國語·地理·토양학·비료학·畜産學·農

36) 동 제3545호(1906.8.30).

37) 동 제3557호(1906.9.13).

38) 水原農學八十年編纂委員會, 水原農學八十年, 1986,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p.21.

39) 統監府, 韓國施政年報(明治 39,40 年度), 明治 41, 統監府, p.377.

40) 위의 책, p.378.

41) 舊韓國官報 제4015호(1908.3.6).

42) 水原農學八十年, p.5.



産製造學・森林經營學(測樹學・經理學)・森林生産學(造林學・保護學・利用學・林産製造學)・수의학대의(해부학 및 生理學・病理學・위생학)가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되는 한편 農學大意를 없애고, 作物을 作物學으로 바꾸었다. 또 수업료의 불징수, 기숙사의 설치, 보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sup>43)</sup>

### 5) 工業傳習所

大韓帝國 정부는 1899년에 官立 商工學校를 설치하여 4년(예과 1년, 본과 3년) 과정으로 상업과 함께 工業에 관한 전문적인 敎育을 실시토록 했다가 1904년에 본교를 農商工學校로 개편하여 공업에 관한 전문적인 實業敎育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06년에 농상공학교를 전공별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방침을 세워 工業分野의 전문교육 기관으로 工業傳習所를 신설하였다. 즉 정부는 1907년 2월 21일자 勅令 제 6호로 工業傳習所官制를 제정하고,<sup>44)</sup> 같은 해 3월 1일자 農商工部令 제 50호로 官立 工業傳習所 規則을 제정하여<sup>45)</sup> 1907년 4월에 官立 工業傳習所를 설립하였다. 다시 말하여 日本의 統監府는 韓國政府로 하여금 일본인 平賀義美를 초빙하여 한국 정부의 공업 분야 담당 고문으로 있으면서 農商工部 소관하에 工業傳習所의 설립 계획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工業傳習所官制와 同規則을 제정하고 1907년 4월에 제 1기생 74명을 수용하여 공업전습소의 수업을 개시토록 하였다.<sup>46)</sup>

工業에 관한 기술의 傳習을 목적으로 한 공업 전습소는 2년제로 염직과·도기과·金工科·木工科·응용화학과·土木科 등 6개과를 두고 13개의 傳習課程을 두었는 바, 傳習課程은 색염과 기직(염직과), 도기와 자기(도기과), 鑄工·鍛工·板金細工(金工科)·造家와 家具(木工科),

化學 제품 分析(응용화학과), 측량·제도(土木科) 등이다. 本所에서는 보조 학과목으로 物理·化學·數學은 圖畫·日語·간이 영어 등을 과하였다. 본교에 監督·所長·技師·舍監·書記 등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입학 자격은 工業家의 자제 또는 장래 工業에 종사하거나 工業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지망이 공고한 男子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 건강한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로 하여 지원자 중에서 경력과 학력을 심사하여 선발하되, 입학 시험 과목은 國漢文·日本語·산술 등이었다. 모든 傳習生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졸업 후 1년간 반드시 傳習을 받은 사업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정부는 1907년 12월 30일자 勅令 제 80호로 工業傳習所官制를 개정하여 本所의 직원 監督職을 제거하였다.<sup>47)</sup>

農商工部는 1908년 3월 30일자 農商工部令 제 64호로 工業傳習所 規則을 개정하여 공업전습소에 1년 과정의 專攻科를 두어 傳習所 수료자로 특정 과목을 전공하려는 자를 선발·입학시키도록 하였다.<sup>48)</sup> 이에 따라 工業傳習所는 1908년 4월 1일부터 전공과를 설치·운영하였다.

農商工部는 1910년 4월 7일자 農商工部令 제 3호로 官立 工業傳習所 規則을 개정하여 本所에 본과와 전공과 이외에 實科를 두되, 실과는 實技를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으로 수업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였다.<sup>49)</sup> 한편 本所의 학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전습 과정에 車輪(木工科)과 道路(土木科)를 추가하였으며, 입학 자격의 연령을 만 17세 이상 만 25세 이하로 하였다. 또 學生을 기숙사에 수용하고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本所 졸업자와 수업자는 傳習한 기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43) 舊韓國官報 제4393호(1909.6.3).

44) 등 제3683호(1907.2.7).

45) 등 제3708호(1907.3.8).

46) 韓國施政年報(明 '39, '40年度), p. 378.

47) 舊韓國官報 제3969호(1908.1.13).

48) 등 제4040호(1908.4.6).

49) 등 제4648호(1910.4.7).

### 3. 私立 高等教育機關의 制度的 概要

1900 년대에 들어오면서 韓國에는 전문학교 수준의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私立學校도 설치되었는 바, 이들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韓國人이 설립한 것과 宣敎系 學校로 구분된다. 이들 機關들은 일정한 法的·制度的 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設立者나름대로 學校를 설립하여 일종의 專門的인 高等教育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그 制度面에서 매우 다양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1) 韓國人 設立의 高等教育機關

開化期에 韓國인이 설립한 사립 학교 중 주로 法律·經濟·政治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專門學校 수준의 학교는 光興學校를 비롯하여 時務學校·開成學校·漢城法學校·普成專門學校·從正義塾·敦明義塾·大東專門學校·隆熙法律學校 등이다.

1898 년 8 월 朴禮秉이 설립한 光興學校는 1899 년 초부터 日語·산술·歷史·地誌·作文·체조와 함께 法律·經濟·行政學 등의 교과목을 가르쳤다.<sup>50)</sup> 光興學校는 1900 년 3 월에 특히 法律科를 설치하였는 바 수업 연한은 3 년이다. 학생 정원은 20 인이었으며, 교과목은 現行法·裁判法(민·형사소송법)·大明律·民法·萬國公法(국제사법, 국제공법)·刑法·商法·行政法論·經濟學·財政學·독서(三經)·作文·擬律·擬判 등이었다.<sup>51)</sup> 光興學校는 1900 년 9 월에 法部의 인가를 받아 法律科 수료자는 司法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法律科를 확장하여 學生을 100 명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업 연한을 2 년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20 세 이상 40

세 이하로 하였다.<sup>52)</sup>

1899 년 1 월 漢城에 설치된 時務學校는 하오 8 시부터 10 시까지 야간으로 운영하면서 15 세 이상 30 세 이하의 男子를 대상으로 각 부 現行章程과 각국 通商條約, 公法, 法律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sup>53)</sup> 時務學校는 1900 년 5 월에 학과목을 개편하여 法學通論·行政學·政治學·物理學·地文學·기하학·化學·日語·산술·歷史·地誌·作文·부기 등의 과목도 가르쳤다.<sup>54)</sup>

1898 년 3 월 釜山에 신설된 開成學校는 1903 년 현재 初等科, 中等科, 研究科 이외에 高等科를 설치하였는 바 고등과는 2 년 과정의 고등교육 과정으로 經學·史學·文學·政治·法律·經濟·哲學大意 등의 학과목을 가르쳤다.<sup>55)</sup>

1905 년 1 월에 설립된 私立漢城法學校는 주간 과정의 예비보통과와 야간 과정의 法學專門科를 설치하여, 법학전문과에서는 法學通論·明律·民法·商法·刑法·제판소구성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行政法·국제공법·국제사법·증거법·파산법·國家學·經濟學·擬律擬判·소송연습 등의 교과목을 가르침으로써 法律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sup>56)</sup>

1905 년 4 월 ‘人才를 배양하여 國家의 기초를 完成하고 國民의 지식을 발달케 함’<sup>57)</sup>과 아울러 ‘一般國民의 專門學業을 양성코자……內外國 法律及 實業學 등을 교수’<sup>58)</sup>할 목적 아래 李容翹이 설립한 普成專門學校는 法律學專門科와 理財學專門科를 두고 법률학과 경제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본과는 2 년 과정으로 법률학전문과에서는 法學通論·民法·刑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경제학·국제공법·警察學·國家學·憲法·財政學·物權法·商法·債權法·會社法·行政法·魚驗法·국제사법·海商法·破產法·상속법·계약각론·증거

50) 皇城新聞 제 2 권 제12호(1899.1.18).

51) 등 제 3 권 제56호(1900.3.16).

52) 등 제 3 권 제223호(1900.9.28).

53) 등 제 2 권 제14호(1899.1.20).

54) 등 제 3 권 제108호(1900.5.16).

55) 경상남도교육연구회 편, 慶南教育史, 경상남도교육위원회, 1980, pp.98~99.

56) 皇城新聞 제135호(1905.1.16).

57) 高大 70 年誌編纂室編, 高麗大學校 70 年誌, 1975, 高大出版部, p.41.

58) 皇城新聞 제1899호(1905.3.22).

법·상행위·日語·산술 등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理財學專門科는 法學通論·財政學·物權法·民法·經濟學·債權法·國家學·憲法·은행론·화폐론·商法·會社法·行政法·歲計論·魚驗法·국제사법·海商法·破産法·상속법·계약각론·상행위·公債論·부기학·화폐론·조세론·統計學·은행부기학·日語·산술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sup>59)</sup>

普成專門學校는 1905년 9월에 漢城法學校에서 이탈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년제의 法律學專門 야학과를 신설하였는 바, 야학과와 교과목은 法學通論·民法·刑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財政學·物權法·商法·經濟學·債權法·會社法·국제공법·行政法·銀行論·歲計論·헌법·어협법·국제사법·海商法·破産法 등이다.<sup>60)</sup>

普成專門學校는 1907년 3월에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sup>61)</sup> 1908년 2월에는 普成小學校에서 관장하던 林學科(강습과)를 인계받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sup>62)</sup> 1909년 3월에는 경영난으로 폐교된 敦明義塾과 隆熙法律學校의 학생 44명을 흡수하였다.<sup>63)</sup> 보성전문학교는 1909년 4월에 法學科의 校外生制度를 실시하여 강의록을 통해 각 地方에서 法學研修를 원하는 人士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法律에 관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64)</sup>

普成專門學校는 1910년 4월에 경제전문과를 폐지하고 대신 商科專門科를 신설하여 3년 과정으로 高等商業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商科에서는 상업도덕·상업문·상업산술·상업주산·상업부기·상업통론·상업경영론·상업지리·은행론·법학통론·經濟原論·민

法·物權·內外國商業史·은행부기·取引所論·철도론·海運論·화폐론·債權論·會社法·통계학·국제공법·상품학·보험법·海關論·창고론·외국무역론·手形法·海商法·財政學·국제사법·破産法·日語·英語·淸語 등의 학과목을 학년에 따라 나누어 가르쳤다.<sup>65)</sup>

政治·經濟·法律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1905년 4월에 신설된 義正義塾은 정치·법률·경제 등 고등 학문으로 일반 국민을 敎育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수업 연한은 3년이었으며, 本校의 교과목은 國家學·法學通論·經濟原論·民法·刑法·物權法·債權法·行政法·商法·財政學·국제공법·국제사법·화폐론·銀行論·外交史·萬國歷史·산술·日語 등으로 되어 있었다.<sup>66)</sup> 양정의숙에서는 1908년 10월에 3개월 과정의 速成測量學校를 부설하여 측량에 관한 단기 기술 교육도 실시하였으며,<sup>67)</sup> 1909년 9월에는 經濟 야학과를 증설하여 3년 과정으로 경제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sup>68)</sup>

정치·경제·법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1906년 漢城에 신설된 敦明義塾은 3년제로 운영하면서 政治原論·經濟原論·헌법·법학통론·地誌(만국)·산술·어학·(日·英)·行政學·財政學·刑法·民法·歷史(萬國)·商法·歲計豫算·外交通義·政治史·국제공법·국제사법 등의 교과목을 학년에 따라 가르쳤다.<sup>69)</sup>

1907년 3월에 조직된 大東學會에서는 1908년 2월에 大東專門學校를 설립하고, 같은 해 3월에 학생을 모집하여 야학 과정으로 주로 法律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大東專門學校는 1년

59) 高麗大學校 70年誌, pp.31~32.

60) 위의 책, p.33.

61) 金英宇, 「韓末의 私立學校에 關한 研究(II)」, 敎育研究 제3집, 1986, 公州師大敎育研究所, p.56.

62) 高麗大學校 70年誌, p.51.

63) 上同.

64) 「普成校校外生」, 皇城新聞 제3051호(1909.4.20).

65) 「私立普成專門學校 商科專門科 學員募集廣告」, 皇城新聞 제3331호(1910.3.31).

66) 皇城新聞 제1905호(1905.4.1).

67) 동 제2892호(1908.10.2).

68) 동 제3160호(1909.8.26).

69) 「學員募集廣告(敦明義塾)」, 大韓每日申報 제380호(1906.11.25).

제의 速成科와 3년제의 專門科 과정을 설치하였는 바, 전문과에서는 法學通論·民法·刑法·物權法·債權法·商法·經濟學·國家學·會社法·상행위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行政學·政治原論·財政學·부기학·헌법·魚鹽法·海商法·국제공법·국제사법·明律·통계학·조세론·漢文·산술·外國語·實地演習 등의 학과목을 학년에 따라 가르쳤다.<sup>70)</sup>

法律學을 야학 과정으로 가르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1908년 9월 漢城에 신설된 私立隆熙法律學校는 3년제로 하오 6시부터 10시까지 야학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法學通論·民法·刑法·商法·訴訟法·헌법·국제법·經濟學·재정학·行政學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sup>71)</sup>

## 2) 宣敎系 高等教育機關

1880년대에 정식으로 來韓한 개신교의 宣敎師들은 초기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한 布敎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교사들은 병원을 통해 病者를 치료하는 한편 근대적인 西洋醫術을 교육하는 일도 병행하였고, 근대적인 학교를 통하여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도 실시하였다. 한국 開化期에 高等教育을 실시한 학교는 세브란스 의학교의 전신을 비롯하여 培材學堂 大學部, 崇實學堂 大學部, 梨花學堂의 高等科와 大學科 등이다.

1885년 4월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濟衆院)은 1886년 3월에 16명의 學生(후보생)을 대상으로 醫學校를 개설하고, 이들에게 먼저 영어를 교수한 후 4개월 후에 12명을 선발하여 本科에 편입시켜 본격적인 醫學敎育을 실시하였다. 이들 학생들은 기숙비와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 政府官吏(주사)로 등용되어 의료 사업에 종사하게 하였다.<sup>72)</sup> 그러나 정규 의학교는 1899년에 설립되었는 바, 이것이 세브란스대의 전신이다. 이 醫學校는 1900년 9월에 濟衆院醫學校로 정부에 등록되었고, 1899년에 입학한 학생은 1908년에 제1호로 7명이 졸업하였다.<sup>73)</sup>

1885년에 설립된 培材學堂은 1895년 9월 1일에 大學科를 설치하였는 바, 대학과에 神學部와 學術部를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sup>74)</sup> 學術部에서 가르친 공통 과목은 古代史·物理·化學·政治經濟學·창가·성경 등이었다.<sup>75)</sup> 학술부는 英語科와 國漢文科로 나누어 영어과는 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國漢文科는 한글 및 漢文, 漢文古典 교육을 실시하였다.<sup>76)</sup> 한편, 神學部는 牧會者 양성 과정으로 수업 연한 4년에 1년 6~8개월 정도 공부하였다.<sup>77)</sup>

1897년 10월에 설립되어 1900년에 정규 中學校로 발전된 평양의 崇實學校는 1905년에 대학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sup>78)</sup> 崇實學堂 大學部는 1906년 8월에 합성승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의 校名으로 정식 출발하고 1908년에 學部로부터 인가를 받았다.<sup>79)</sup> 本校는 수업 연한 4년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초기에는 학생의 學力差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졸업시키기도 하였다.<sup>80)</sup>

교과과정(1909~1910)은 聖經·數學·物理學(熱·光·자기학·전기와 X선·정성화학·정량화학)·自然科學(비교동물학·발생학·生物學·天文學)·歷史學(美國史·英國史·20세기사·傳記), 語學(英語), 人文科學(윤리학·철학·경제학·교육학·논리학·심리학), 웅변·음악 등의

70) 「學員募集廣告(大東專門學校)」, 皇城新聞 제2711호(1908.2.27).

71) 皇城新聞 제2877호(1908.9.13).

72) 연세창립 8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 1971, 연세대 출판부, p.48.

73) 위의 책, p.58.

74) 배재 100년사 편찬위원회, 培材百年史, 1989, 培材學堂, p.64.

75) 위의 책, p.65.

76) 上同.

77) 위의 책, p.66.

78)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90년사, 1987, 숭실대학교 출판부, p.103.

79) 위의 책, p.105.

80) 위의 책, p.106.

과 목으로 되어 있었다.<sup>81)</sup>

梨花學堂은 1908년에 學部의 인가를 받아 學制를 변경하여 初等科와 中等科 이외에 高等科를 설치하였는 바,<sup>82)</sup> 고등과의 교과과정은 성경·漢文·代數·기하·三角·天文學·地文學·心理學·教育學·物理·化學·英文學·萬國地誌·高等生理·經濟·歷史(만국·근세·上古·

영국·미국) 등의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sup>83)</sup> 따라서 梨花學堂 高等科는 가르친 교과목의 수준으로 보아 당시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 梨花學堂은 1910년 4월에 大學科를 설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高等教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81) 위의 책, pp.146~147.

82) 鄭忠良, 梨花八十年史, 1967, 梨大出版部, p.764.

83) 위의 책, p.70.